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여부의 고지 또는 게재 의무화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19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여부의 고지 또는 게재 의무화	3
※ 참고자료: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제도 개요	8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구인자가 그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나, 최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는 등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구인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직자 고지 및 구인정보 게재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산업

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제1호, 제25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여부의 고지 또는 게재 의무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고지 또는 게재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6항제1호, 제25조제1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 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 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 지할 것 ＜신 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u><신 설></u> 2.·3. (생 략)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u>근로기준법</u>」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u><신 설></u> <u><신 설></u> 2.·3. (생 략)	나. 최근 3년 이내에 「<u>산업안전보건법</u>」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의 사업주 2.·3. (현행과 같음)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 ----- ----- -----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 가. 「<u>근로기준법</u>」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u>산업안전보건법</u>」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의 사업주 2.·3.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①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¹⁾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지와 허가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②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구인자가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라면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야 함.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²⁾,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고 함)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화재 및 폭발로 인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의 해당 사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급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생략)

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함³⁾.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인지를 구직자에게 고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게재)할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표]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의 준수사항	1. 체불사업주 여부 고지 2. 허가 등의 승인 여부 고지	1. 체불사업주 여부 고지 2. 허가 등의 승인 여부 고지 3.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의 사업주 여부 고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의 준수사항	1. 체불사업주 여부 고지 2.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의 미제공	1. 체불사업주 여부 고지 2.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의 미제공 3.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의 사업주 여부 게재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여 구직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들에게 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재해자 발생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바,⁴⁾ 전

3)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제도는 참고자료 참조

자는 ‘사업주’를 공개하도록 하고, 후자는 사업장을 공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⁵⁾.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공개 대상이 다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공표는 개인인 사업주의 책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는 물리적 공간인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현행법령의 체계와 취지에 맞추어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을 고지·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추어 공표 대상 사업장을 고지·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개인정보위원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명단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4) 앞의 각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참고

5) 임금체불은 사업주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고, 산업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성을 공표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참 고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

- **(목적)**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따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 → 경각심 제고 등 사업주 의무이행 유도

* (산안법 제10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대상)**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형(刑)이 확정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 12조)]

(10조1항) 공표대상으로 정하는 사업장

- 1호. **(사망자 2명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2호.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3호. **(중대산업사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4호. **(산재은폐)**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5호. **(산재미보고)**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 舊 법령의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평균재해율 상회 사업장’ 기준은 ‘20년 이전 발생 재해까지만 적용

(10조2항) (원청도 함께 공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공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

(12조) (원·하청 통합공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표

- **(현황)** ('22) 723개소 → ('23) 494개소 → ('24) 468개소

- **(공표에 따른 효과)** 3년간('27년까지) 정부포상에서 제외

- 공표 사업장에 대해 CEO 안전교육 실시